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57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22.

발의자 : 전현희 · 조배숙 · 문미옥
김삼화 · 소병훈 · 김종대
안규백 · 서영교 · 금태섭
김정우 · 전혜숙 · 박홍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도시공원 내 호수에서의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공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이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신설).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·관리) 제1항 및 제2항
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
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“공원관리청”이라 한다)는 도시공
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
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
“공원관리청”이라 한다)는”을 “공원관리청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19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의 설치·관리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 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 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 는 군수(이하 “공원관리청”이라 한다)는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
<p>제20조(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 리의 위탁)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 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 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 는 군수(이하 “공원관리청”이라 한다)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 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 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0조(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 리의 위탁) ① 공원관리청은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